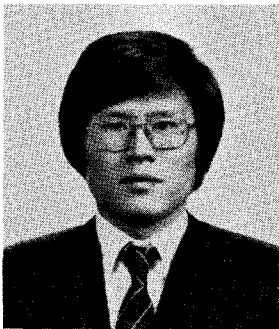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現行法上에서의 Trade Secret 保護와 問題點(完)



尹 宣 熙

LL.D.Candidate,  
Faculty of Law,  
KOBE UNIVERSITY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  
言語文化研究所 共同研究員  
I.L.T.會員

## 目 次

1. 問題의 提起
2. Trade Secret의 定義
3. 憲法에 의한 保護
4. 不法行爲法에 의한 保護
5. 契約法에 의한 保護
6. 勞動法에 의한 保護
7. 商法에 의한 保護
8. 刑法에 의한 保護
9. 기타의 法에 의한 保護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3月號에서 계속>

### 7. 商法에 의한 保護

위에서 본바와 같이 明示的 계약에 의해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보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가 회사의 理事 또는 合名會社 회원인 경우는 默示的 계약에 의해서도 트레이드 시크리트는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묵시적 계약은 다시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競業禁止의 의무로, 合名회사 의무와 이사의 敬業금지 의무로 나누어서 보면, 合名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지 못하며 同種 營業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無限責任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商法 제198조 제1항). 이러한 敬業금지 의무를 合名회사의 사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合名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업무 진행권이 없는 경우에도 감시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을 잘 알 수 있으므로 敬業적 활동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회원은 機密을 사용하여 私益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2)</sup>

催基元 教授는 「회사가 일시적인 휴업이 아니라 營業廢止의 의사로 사실상 營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敬業금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sup>9)</sup>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商法 제382조 제2항)이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sup>4)</sup>

이러한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機密을 잘 알수 있으므로 이사의 地位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去來를 하거나 同種營業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회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사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최기원 교수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이사가 그 직이 끝남과 동시에 경업금지 의무도 消滅한다고 하나,<sup>5)</sup> 郭潤直 교수는 고용관계가 종료후 경업금지 의무는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sup>6)</sup>고 한다. 최기원 교수설은 이사가 종임에 의해 경업금지 의무가 소멸된다면, 이사가 재직중에 얻은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終任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든가<sup>7)</sup> 아니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전직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가 그 직을 그만둔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경업금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야만 할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 郭潤直 教授說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善管注意 의무는 商法 제382조 제2항에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해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sup>8)</sup>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收取한 果實을 회사에 引渡하고 회사를 위하여 自己名義로 取得한 權利를 회사에 移轉하여야 한다.<sup>9)</sup> 그리고 商法 제428조의 資本 忠實의 책임도 있다.

끝으로, 경영금지 의무, 선관주의 의무와 같이 충실의무는 商法 제17조 제1항 「商業使用人は 營業主의 許諾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부류에 속한 去來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就任制限과 회원의 겸업금지 의무를 사원의 충실업무라고도 한다.<sup>10)</sup>

왜냐하면 人的會社는 회원이 연대무한책임을 지고 人的信賴 관계를 기초로 하는 회사로서 사원 상호간에 충실의무가 要請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그러므로 商法 제399조 제1항(회사에 대한 책임), 商法 제397조 제1항(겸업금지에 違反한 去來), 商法 제382조 제2항(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sup>12)</sup>

- 註 1) 小野 昌延 營業秘密の保護 有信堂(1968) 395p  
 註 2) 小野 昌延 前掲書 396p, 大陽 建一郎 商法總則全集27卷 159p, 西原 寬一 日本商法論 第1卷 46p, 催基元 新版 商法學新論(上) 博英社(1984) 371p  
 註 3) 催基元 前掲書 371p  
 註 4) 한국 민법 제681조  
 註 5) 催基元 전게서 593p  
 註 6) 郭潤直 債權各論(民法 講義 IV) 博英社(1990) 399p, 李燕鈺 營業秘密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碩士 학위 논문(1990년 5월) 46p  
 註 7) 1988년 일본 設備 사건을 보면, 일본 설비의 取締役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종업원을 勸誘한 사건은 취체역이 忠實義務와 경업금지 의무 違反으로 34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命하여 졌다.(1988년 東京地裁)  
 註 8) 한국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註 9) 한국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3조  
 註 10) 李哲松 商法總則·商行者 博英社(1989) 115p에는 「商業使用人は 營業主와의 관계에서 雇傭·委任 등 그 기초적인 法律關係에 의해 勞務提供 義務(민법 제655조), 委任 사무처리의무(민법 제680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민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상법에서는 이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商業使用人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의무로서, 경업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있다(상법 제17조 제1항). 상인은 民事

去來에서와는 달리 다른 상인과의 경쟁 또는 잠재적 경쟁 속에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그에 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업사용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주와 경쟁을 하거나 다른 상인을 보조하여 영업주와의 경쟁을 도와서는 안된다.

註 11) 최기원 전게서 372p

註 12) 이철송 전게서 117p

## 8. 刑法에 의한 保護

1) 우리나라의 現行 형법에서는 트레이드 시크리트 그 自體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없지만 재산법 규정인 절도, 업무상 횡령, 배임과 공범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도, 업무상 횡령, 배임, 공범은 내부자에 의한 범죄와 외부자에 의한 범죄 또 내부자와의 공범 등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내부자에 의한 범죄는 ①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橫領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前項의 형과 같다」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外部者에 의한 범죄는 ①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 着守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占有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에 門戶 또는 牆壁 其他 建造物의 일부를 損壞하고 前條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同條 제2항 「흥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前項의 형과 같다.」 ③ 형법 제362조 제1항 「贓物을 取得, 讓與, 運搬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前項의 행위를 간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 내부자와 공범인 경우는 ①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正犯으로 처벌한다.」 ②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教唆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외에도 ①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전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供與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3항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대가를 追徵한다.」 ②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요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禁錮 또는 1만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의 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하의 조문은 트레이드 시크리트가 有體物로 化體化된 경우에는 절도, 업무상 횡령 등의 이른바 재산법의 범죄 유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그 절도, 업무상 횡령 등의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靑寫眞·設計圖·고객리스트 등의 종이, 후로피 디스크 등은 그 물건 자체의 가치에 불과하다. 또, 이런 행위를 종업원이 행하면 背任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이고, 외부자에 의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트레이드 시크리트 그 자체가 아니라(즉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母體를 사진 촬영하거나 혹은 복사하는 경우에도) 住居侵入이 성립한다.<sup>3)</sup> 그러므로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재산법 규정에서 적용 보호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다시말하면 財産罪의 客體는 「재물」이며,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은 크게 둘로 나누어 진다.

有體性說(Körperlichkeit)은 특히 절도죄에 관하여 그 객체는 유체물(고체·액체·기체)에 限定되어야 하며, 전기·水力·放射線 또는 牛馬의 견인력과 같은 Energy는 비록 그것이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관리가능성설(Beherrschbarkeit)은 관리가 가능한 전기나 수력 등의 動力도 재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은 「재물」과 「이익」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여기의 관리는 물리적 관리에만 局限되어야 하고, 채권 기타의 재산권에 있어서와 같이 사무적으로만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通說) 이리하여 전기·수력·방사선·우마의 견인력은 모두 당연히 재물이 되는 것이지만, 라디오나 T·V의 방송은(電波) 관리 불가능하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sup>5)</sup>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죄이다.

재산죄의 하나인 절도의 경우, 財物의 절도로 인해 재물의 占有가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이전되므로 피해자의 이용가능성은 현실로 침해된다. 이에 대해 트레이드 시크리트에서는 트레이드 시크리트 내용이 행위자에게 알려지더라도 그 트레이드 시크리트가 피해자의 손에서 없어서서 이용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sup>6)</sup>

그러므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의 「이전성」이며 그 이외에도 「不法領得의 意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sup>7)</sup> 특별법에 경제 형법(企業 祕密罪)의 규정을 두든기 아니면 기존 형법을 개정하여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관한 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형법학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것 이외에도 비밀누설에 관한 죄가 있다. 이것을 다시 공무상 비밀의 누설과 업무상 비밀의 누설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은 형법 제127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

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

즉, 이런 규정은 특허청, 과학기술처 등의 공무원과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원 등 재직중 취득한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퇴직후에 개시하면 국가공무원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대만히 한때」에는 처벌되므로 형법 등이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업무상비밀의 누설은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藥種商, 助産員,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此等の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知得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2만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다른 죄와 다르게 처벌받지 않는다. 즉 親告罪이다.

註 1) 여기서 1986년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이 판결은 被用者가 회사의 기술문서를 복사하여 가지고 간 행위에 절도죄를 적용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퇴직할 때 회사의 연구부에 보관되어 있는 기술문서를 복사하여 가지고 간 피용자에 관계가 있다. 이 문서는 국외에서는 이미 개시되어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실제 선전을 위해 외국기업에 무료로 配布되었다. 한국 회사의 연구부원은 그 문서를 자신의 것처럼 자유로 복사하였고, 또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문서는 회사사업의 기술적인 면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용이하게 입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위에 연구부원은 그 문서를 자기의 연구직무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법원은 해당문서는 회사로서는 경제적 가치 및 주관적 가치가 있고, 그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문서를 가지고 간 것은 절도에 해당되고, 그것이 단순한 문서의 복사에 지나지 않아 회사에 반환할 것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

있다는 것은 그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것은 송상현 교수가 (財) 比較法 연구センター에 보낸 연구보고서 「Korean Law on Trade Secret」(1990) 3p ~4p 에 게재된 것을 茶園 成樹씨가 일본어로 번역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한 것임.

注 2) Kwag Ha Ko, 「Korean Laws and Policies on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11 Korean J. Comp. L. 51, 72(1983)에 의하면 「노우 하우는 형법에 의해서 노우 하우가 化體된 유체물에 대한 범죄 또는 외부자에 의한 노우 하우의 불법한 취득에 관련한 범죄를 금지하는 것에 의해, 혹은 피용자에 의해 배임을 금지하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注 3) 소야 창연, 영업비밀의 보호 유신당(1968) 449p

注 4) 황산덕 형법학론(제6정판) 방문사(1984) 270p, Kwang Jae Park,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Korea」 13 Korea J. Comp. L. 83, 121(1985)

注 5) 황산덕 전게서 270p

注 6) 임양일 「재산적 정보의 형법적 보호」 일본형법학회 형법잡지 제30권 제1호(有斐客) 10p, 山口 厚 「영업비밀의 침해と 刑事罰」ジュリ자 NO. 962 46p

注 7) 山口 厚 前掲注(6) 46p

## 9. 기타의 법에 의한 보호

### 1) 라이선스 계약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라이선스 계약에 明示하지 않으면 사용 금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계약 해제 후에도 라이선스는 신뢰유지 의무가 있다고 한다.(텍사스주 최고법원)

또 미국과 같이 라이선스는 신뢰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라이선스 관계를 체결하기 전, 즉 계약 교섭 중의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라이선스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댓가인 것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세히 알려주면<sup>2)</sup> 중요한 트레이드 시크리트가 개시되므로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쌍방의 이해가 대립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은 첨단기술 혹은 필요 기술을 받아 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선진각국의 라이선서들이 마음 놓고 기술이전을 할 것은 물론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M & A 와의 관계

최근 선진각국들은 국내 기업간 또는 외국 기업과의 M & A를 기업전략화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매수하는 측은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포함한 회사의 재산전부를 알 필요가 있으나, 매수당하는 측은 계약이 성립할 때 까지는 개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 M & A를 할때에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 3) 특허법과의 관계

최근 산업의 세분화로 인하여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가 선진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설과 반대설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특허와 병존이 필요하다는 공존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의 경우와 특허요건을 갖추고도 특허등록을 하지않고 트레이드 시크리트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설<sup>2)</sup>은 전자는 물론 후자도 트레이드 시크리트로 보호하려는 설이나, 반대설은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기술의 비약화가 진전되며, 기술의 공개 대상으로써 권리를 대여하는 특허제도가 形骸化 나아가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특허대상이 되지않는 발명과 특허요건에 불충분한 발명에 대해 반대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발명 및 비밀과 특허요건을 갖추었으나 특허출원하지 않은 발명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즉, 이것을 공존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 註 1) 라이선스 계약 교섭 중, 그 라이선스 대상인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한 자가 지득하였으나, 그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했던 자가 이것을 이용 및 게시할 경우에는 과연 현행법상 사용금지(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미국의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 성립전의 게시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인 이상, 쌍방이 신뢰관계에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사용금지(중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 註 2) 紋谷 暢男「Know-How およびその 보호」シユリ자 No. 500, 572p : 일본변호사 연합회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 요강」
- 註 3) 양야 의신, 양야 계자 「정보사회におけるノウハウ 규제의 이론」シユリスト No. 428, 44p
- 註 4)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주의 Common Law에 의해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가 연방법 특허법에 抵觸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의논되며, 연방·공소재판소에서 판단도 대립되고 있었지만, 최고재판소에 의해 「주의 Common Law에 의한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는 연방법인 특허법에는 抵觸하지 않는다.」

란 판단이 나오므로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보호는 연방법인 특허법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는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 되었다. (熊谷 健一 「영업 비밀의 보호と 특허제도 について」 특허관리 Vol.40 No. 10, 1215p, 1216p)

## 10. 맺는말

현행법하에서는 트레이드 시크리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헌법에서는 재판공개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은 이를 공개하여야만 하지만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사용금지(중지) 청구권이 없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되어있다. 형법에서는 비밀이 모체가 되어 화제화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으며 화제화되지 않은 것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비밀죄도 없다.

이상의 것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일본 등의 선진국법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되므로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관한 법률 독립법으로 제정하던지 아니면 기존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